



유언 바로 알기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상속 분쟁을 막는 첫 단추이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해도 자필사인이 없거나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유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언장 작성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유언과 상속은 100세시대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영역이다. 가족간 재산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 몇 년에 걸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형제간 우에 파탄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유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법률 비용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언에 관한 정보 중에는 의외로 잘못된 것들이 많으므로 미리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이다. 자필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 도장 없이 사인만 한

유언 역시 자필유언으로 효력이 없다. 한편 공증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 공증인 사무실 직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유언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증유언은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의 내용이 증인에 의해 알려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Q1. 주소 없는 유언,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언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유언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을 활용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비밀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① 유언자가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은 다음 ② 그 봉투에 유언자의 도장을 찍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시킨 후 ③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쓰고 증인이 확인한 날짜를 기재하여 ④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은 다음 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해 그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 유언의 장점은 유언의 비밀이 보장될 뿐더러 증인이 2명 있으므로 자필증서와 비교할 때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동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필유언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비밀유언의 방법에 의하면 유언자의 주소가 없어도 그 유언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비밀증서의 유언방법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언제나 무효가 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비밀증서의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Q2. 스마트폰으로는 유언할 수 없을까?

녹음유언도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이다. 녹음유언의 장점은 방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음은 분실, 은닉, 파기,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고 녹음된 음성만으로 실제 녹음자가 유언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녹화한 경우라면 녹음자가 유언자인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에 의한 유언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녹음유언을 하려면 ① 유언자가 유언을 녹음한 후 ② 유언자의 성명과 유언날짜를 이어 녹음하고 ③ 증인이 그 유언녹음에 참여하여 유언자의 유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의 성명 역시 녹음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의 이름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언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유언증인이 없는 경우 녹음유언은 효력이 없다. 단, 유언자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알 수 있고, 유언의 날짜를 녹화된 정황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유언에 참여한 증인

이 누구인지 녹화화면으로 알 수 있다면 스마트폰에 의한 '녹화'도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

Q3.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유언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구수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구수'란 '유언자가 말을 한 후 이를 받아 적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인데 흔히 임종 직전 유지를 말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구수유언이 유효하려면 ① 임종 직전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평상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을 말한 다음 ③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다시 유언자에게 확인시키고 ④ 그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⑤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방법이다.** 따라서 구수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위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함에도 구수유언을 한 경우 무효가 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유언은 언제나 철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유언과 후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언제나 후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효한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그 내용이 전에 작성된 공증유언과 다르다면 구수유언이 효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몇 년 전 공증유언을 통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둘째에게 재산을 준다는 구수유언을 작성한다면, 구수유언이 유효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유언내용이 바뀐 것에 대하여 장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ㅎ

summary

- ① 가장 널리 쓰이는 유언방식은 자필유언과 구수유언이지만 비밀유언, 녹음유언, 구수유언도 활용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언을 활용하면 컴퓨터로 출력한 유언도 유효할 수 있다.
- ③ 녹음유언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언할 수도 있다.
- ④ 구수유언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이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SBS스페셜 (상속), 서울경제 TV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등 언론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